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☑기타)

		-	\	<u>, </u>	<u>ф</u> , I -	' /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안기복 선임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기반시설 및 자원 운영업무를 외부주문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 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60조제1항제1호는 금융회사가 정보처리시 개발업무를 외부주문(이하 '외주개발')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사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·운영하도록 있습니다. □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60조제1항제1호등 처리시스템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며 유지보수를 업무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, 					상 업무에 사용되는 치·운영하도록 하고 존제1항제1호는 정보 며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개발 통로 이용 등을 원천 해석한 바 있습니다 행하는 외주인력에는

- ***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

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